



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방안

김석영 연구위원, 황인창 연구위원

향후 보험회사는 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사업을 위한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,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. 현재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 활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.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에 보험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-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IFRS17 제도 도입 시¹⁾ 보험회사(특히, 생명보험)의 재무회계 자본 및 가용자본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.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음.
 - 금리 하락 시 국내 보험회사(특히, 생명보험)는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장기 상품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부채 증가로 인해 이차역마진이 확대됨.
 -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미래 예상 손실이 재무회계 자본 및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짐.

1) 향후 보험산업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제도(IFRS17, 2021년 시행 예정) 및 지급여력제도(신지급여력제도, 시행시기 미정)를 도입할 것으로 보임.

〈그림 1〉 주요국의 국채 금리(만기 10년)



자료: 연합인포맥스.

〈표 1〉 생명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성 현황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금액	비중
금리연동형	2,956,553	60.9
최저보증이율 적용대상	692,720	14.3
금리확정형 특약 등	254,141	5.2
금리확정형	1,899,659	39.1
합계	4,856,213	100.0

주: 2016년 3월 말 기준.

자료: 예금보험공사.

■ 향후 보험회사의 자본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사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.

-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지급여력 비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서비스,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사업분야에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- 보험회사는 재보험 활용을 통하여 요구자본 또는 가용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, 미래이익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음.

■ 재보험은 전통적인 위험전가와 더불어 요구자본, 가용자본, 자본 비용의 변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음.

- 전통적인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여 원수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시킴.
- 또한, 재보험은 다양한 재보험 출재방식과 재보험 현금흐름의 조합을 통하여 원수보험회사의 자산 증가, 부채 감소, 위험자본 감소 등의 형태로 재무상태를 개선시켜 줌.
 - 예를 들어, 공동재보험을 통하여 준비금을 이전함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키고 이차역마진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음.
- 재보험회사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수보험사에게 계약 첫해에 초기이익수수료로 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음.
 - 초기이익수수료는 현행 재무회계(IFRS4 1단계)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부채로 인

식되며, 현행 RBC 제도에서도 가용자본 산출 시 재무회계 자본을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용자본으로는 인정되지 못함.

- 향후 IFRS17 도입 시 미래 발생할 이익의 현가는 계약자서비스마진(CSM)으로 부채이기 때문에 재보험에 의한 초기이익수수료는 부채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됨.

● 재보험거래는 회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거래와 달리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.

- 자본시장을 통한 거래(유상증자, 채권발행 등)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함.

■ 해외에서는 위험전가와 손실가능성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의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, 필요 시 금융재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함.

●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나 상당한 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위험전가가 없을 경우 재보험으로 인한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함.

● 금융재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위험전가와 함께 재무적인 목적을 위한 재보험을 말하며 일본은 금융재보험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재보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.

- 재보험사의 신용등급, 수수료 지급, 재보험 계약기간, 청산절차, 합병 절차 등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재보험은 금융재보험으로 분류함.

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 활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.

● 재보험거래가 주로 위험보험료 출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보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거래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.

- 금융당국은 재보험 원칙에 입각한 위험전가는 허용한다는 방침임.

● 보험위험과 다른 위험이 함께 출재되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경우 금리리스크가 변하게 되지만 현행 RBC 제도에서는 금리리스크 변화가 재무건전성 비율에 반영되지 않음.

- 재보험으로 보험리스크가 이전될 경우 RBC 비율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리리스크 산출 시에는 재보험에 의한 금리리스크 감소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음.

- 새로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재보험으로 인한 금리리스크 전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.

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에 보험산업이 능동적

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- 금융당국은 재보험을 통한 위험이전이 지급여력비율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.
- 보험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비용 조달 등을 위하여 다양한 재보험 기법 활용이 필요함.
 -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험업계의 재보험 활용에 대한 감독 불확실성의 해소가 필요함.
- 보험회사는 다양한 재보험 기법을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.
 - 재무건전성 개선 및 신규 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재보험 활용이 필요함. **kiri**